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생환 의원 외 10명
- 나. 의안번호: 제1706호
- 다. 발의일자: 2020. 8. 4.
- 라. 회부일자: 2020. 8. 10.

### 2. 제 안 사 유

-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의 옥내 노후배관 교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노후 사용자 시설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20조제1항제7호)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를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옥내 노후배관을 교체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에너지공사는 1985년 11월, 목동에 국내 최초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이래, 2020년 8월 현재 양천구, 노원구 등 총 6개 자치구 25만여 세대의 아파트와 300여 개소의 시설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집단에너지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전체 사용 세대 중 66%인 16만 9천세대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음. 이들 아파트에서는 난방설비의 노후화<sup>1)</sup>가 진행되고 있어 열손실로 인한 에너지 낭비, 난방품질 불량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 보급현황〉

(2020년 8월 기준)

구분		서부지사(목동)	마곡	동부지사(노원)
공급 대상	주택용	119,335	10,318	127,300
	업무용(개소)	114	177	8
	공공용(개소)	76	5	36
	냉방(개소)	30	178	1
시설 규모	보일러	870	113(용량표기불가)	750
	열생산(Gcal)	528	68	406
	발전	24.7	-	37
	배관	184	54	178
	최초공급일	'85년 11월	'17년 12월	'94년 12월
공급지역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1) 배관 보온재의 노후화, 주요 밸브 및 열교환기의 누수, 계량기 불량 등

- 이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시 실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 까지 3만2천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2018년부터 이미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사용가 시설 교체지원 사업’을 제20조(사업)에 명시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용가 시설’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sup>2)</sup>하고 있는 ‘사용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지원방식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시 실공사비 부분 지원 및 기술 지원
지원대상	공사와 열수급계약 체결 후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 ※ 연도별 지원대상: 2020년 동북권역(동부지사), 2021년 서남권역(서부지사) 확대
지원금액	세대당 40만원 또는 실공사비 30% 중 낮은 금액 지원 ※ 지원효과, 예산규모, 타사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
지원범위	사용자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난방 설비)

####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가능세대 (누적)	2,000	7,500 (9,500)	7,500 (17,000)	7,500 (24,500)	7,500 (32,000)
소요예산 (누적)	8억원	30억원 (38억원)	30억원 (68억원)	30억원 (98억원)	30억원 (128억원)

※ 2020년 사업 실적에 따라 2021년 이후 사업목표 수정 보완 예정

2) 집단에너지법 제2조(정의)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